

MATERIAL SAFETY DATA SHEET

(물질안전보건자료)

계 정 일 : 2016. 07. 28 / 개정사유 : 유해물질 확인코드 추가

1. 화학물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제 품 명 : XL-0715

제 조 사 : THERMAL LUBE INC.

주 소 : 255 LAEROSSE AVE POINTE-CLAIRE, QUEEBC, CANADA H9R-1A3

TEL : (514)694-5823 FAX : (514)694-8628

수 입 원 : 라우화학 주식회사 / www.rauh.kr

정보제공자 : (주)지에이치아이 / TEL : 1833-5995

2. 인체유해성

가. 화학물질의분류
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3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결고표시 항목 그림문자



신 호 어 : 경 고

유해.위험문구 :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
예 방 : 분진 흡 미스트 증기 및 스프레이 흡입을 피하십시오

취급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

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

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

대 응 : 눈에 물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

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

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

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

-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
- 저 장: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.
밀봉하여 저장하시오
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
- 폐 기: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, 용기를 폐기하시오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 물질 명	CAS 번호	%
1-데센, 호모중합체, 수소화된	68037-01-4	80 ~ 85 %
소수성 이산화 실리콘, 무정형	67762-90-7	8~ 13 %
이황화 몰리브데넘(이황화 몰리브덴)	1317-33-5	0.5 ~ 5.0%
Additives	proprietary	0.5 ~ 5.0%

4. 응급조치방법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-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- 오염된 의복을 제거한 후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세척한다.
 - 필요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다. 흡입했을 때
- 피해자를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,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.
 - 호흡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.
 - 증상 발생 시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라. 먹었을 때
- 즉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내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.
 -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억지로 토하게 하지말것.
- 마. 의사의 주의사항
-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.

5.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소화제
- 적절한 소화제 :

-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, 아산화탄소, 일반적인 포말
- 대형 화재 시 :
 -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.
 -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고,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.
 -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.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 - 열분해생성물 :
 - 이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 등.
 - 화재 및 폭발 위험 :
 -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.
 - 폭발성 증기/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 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시오.
 -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

6. 누출 사고시 조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 - 눈과 피부에 제품이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하며, 보호안경, 안전장갑, 안전화와 안전 복을 착용한다.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 - 모래, 흙 또는 흡착포로 제거하고 유출 확산을 저지한다.
- 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
 - 흡착제, 흡수제, 톱밥, 모래 등을 이용해서 번지는 것을 막고 제거한다.
 - 다량의 경우 용기, 펌프 등으로 회수한다.
 - 자연 발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질을 충분히 닦아 내거나 완전히 흡수하여 폐기할 것.
 - 물질의 누출이나 폐기시 또는 누출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할 것. 어떤 법규가 해당되는지 결정해야만 함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 취급 요령
 -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.
 -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. 먹지 말 것, 산업위생을 적절히 관리할 것.
 -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.
 - 화기에 주의하고 화염 불꽃, 고온물체와의 접촉을 피할 것.
 -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식음 및 흡연할 것.

-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.

나. 보관 방법

- 가열금지, 화기주의,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.
- 적절한 주의를 하고 산화성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.
-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밀봉할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관련정보

가. 공학적 관리방법

- 연속 작업시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국소 환기 : 연속 작업 시, 또는 노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할 것.
- 일반 환기 : 추천함.

나. 호흡기 보호

- 일반 사용시 요구되지 않으나 연속 작업시나 노출 허용치를 초과 하는경우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.

다. 눈 보호 : 적절한 보호구 및 보호안경을 착용할것.

라. 손 보호 : 반복 접촉시 보호장갑(내 유성, 내 화학성)을 착용할 것.

마. 신체 보호 : 피부 접촉을 최소 화 시키고 안전 복을 착용할 것.

바. 위생상 주의사항 :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.

사. 노출기준 (TWA) :자료없음

9. 물리적 화학적 특성

가. 외 관 : 파랑

나. 냄새 : 약간 냄새

다. 수소이온지수(ph) : 자료없음

라. 용 해 도 : 자료없음

마. 끓는점/끓는점범위 :자료없음

바. 녹는점/녹는점 범위: 자료없음

사. 폭 발 성 : 없음

아. 산 화 성 : 없음

자. 증 기 압 (mmhg) : 자료없음

차. 비 중 : 0.88

카. 분 배 계 수: 자료없음

타. 증 기 밀 도 : 자료없음

파. 주 도 : 2

하. 분 자 량 : 자료없음

10. 안전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: 안정
- 나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: 화기, 직사광선 및 강산화제
- 다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 질소 산화물, 탄소 산화물, 등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 - 급성독성
 - 경구 자료없음
 - 경피 자료없음
 - 흡입 자료없음
 -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
 -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단기간 접촉 시 눈에 자극을 일으킴
 -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
 - 피부과민성 자료없음
 - 발암성
 -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
 -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
 - IARC 자료없음
 - OSHA 자료없음
 - ACGIH 자료없음
 - NTP 자료없음
 - EU CLP 자료없음
 -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
 - 생식독성 자료없음
 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 호흡기로 노출시 자극을 일으킴
 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자료없음
 - 흡인유해성 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수생 및 생태독성 : 자료 없음.
- 나. 토양 이동성 : 자료 없음.
- 다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 없음.
- 라. 동 생물의 생체내 축적가능성 : 자료 없음.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
 - 폐기물관리법(법률 제4363호) 제 25 조에 의해 관리
- 나. 폐기방법
 -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

허가를 받은자, 제 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 활용 하는자,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, 또는해양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다. 폐기시 주의사항

- 법에 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의뢰하여야 하며 절대로 임의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.
-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

- 선박 및 항공 운송법에 미 규정(IMDG 코드에 해당사항 없음)

나. 운송시 주의사항

- 해당 관련법에 따라 운송하여야 함.
- 취급시 제 7항을 참조할 것.
- 누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사항은 제 6항을 참조할 것.

다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IATA법규에 해당되지 않음. (IATA-DGR : 항공운송)

15. 법저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관련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16. 기타정보

가. 자료의 출처 : (주) 라우화학

나. 참 고 문 헌 :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자료, 화학백과사전, 기존화학물질목록